

협력업체를 위한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2025. 10.

- 하이브는 하이브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하도급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하이브가 제공하는 상생·협력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하도급법 개요와 적용 범위

가. 하도급법 개요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연간매출액이 더 높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 하도급법의 규제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 · 내국신용장개설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의무	· 선금금 지급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
원사업자	· 부당특약 설정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구분	내용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청구 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부당감액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서류보존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 관련 규정

- 법령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시·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고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나. 하도급법의 특성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하도급법 적용 배제' 조항을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부당특약으로 제재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45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법률 규정이 하도급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하도급거래'란,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거나
 - ②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용역위탁·건설위탁·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여,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원도급관계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
 - 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위탁내용이

원사업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제외 대상(예시)

-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구매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략적으로 규격·표준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단순 구매거래(단, 사양서·도면·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 구매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닌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탁한 경우

1) 제조위탁

□ 제조위탁의 개념

-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제조 대상인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물품 등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유형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예)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예) 기계·전자제품 생산업자 등이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예)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기계, 전자 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2) 용역위탁

□ 용역위탁의 개념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지식·정보성과물'과 '역무'는 하도급법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유형

-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i) 각종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공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 시스템개발 또는 (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방송프로그램,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광고제작·편집물 또는 전자상거래 콘텐츠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

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디자인, 상표, 지도 또는 편집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역무의 공급 위탁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i)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 또는 (ii)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i)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ii)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또는 (iii)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 (i)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또는 (ii) 제조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입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주체로서,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입니다.
-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중견기업

-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만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견기업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	자산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매출기준: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대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fo.mss.go.kr)에서 검색 가능	

2. 하도급법 위반시 대응 절차

가. 분쟁 발생 시 사내 신고 채널

□ 하이브 사내 신고 채널

- 하이브 신고 채널을 통해 분쟁·고충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hyb-compliance-team@hybecorp.com
- 우편: 04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 3가, HYBE) 주식회사 하이브 컴플라이언스팀
- 온라인 접수: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9.asp?organ=8230>
※ 하이브 홈페이지(<https://hybecorp.com>) 우측 하단의 "HYBE 제보 센터" 링크로도 확인 가능

나.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정처리기한 60일, 당사자 동의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

-
-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성립이 되거나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사 등의 위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제도 상담 안내

-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
- 분쟁조정 상담센터 ☎1588-1490
- 상담시간: 평일 09:00~19:00

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https://case.ftc.go.kr/main.do>)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원사업자의 의무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하도급거래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

하도급계약 체결	계약 이행	목적물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종료
경쟁입찰·수의계약 거래조건, 대금 결정 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선금금 수령 수출품목 위탁 업무지시·관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대금조정 요청	목적물 수령, 검수 반품, 위탁 취소	대금 감액 대금 지급	계약해지· 해제
✓ 서면발급 의무 ✓ 서류의 보존 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	✓ 선금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관세 등 환급금 지급 의무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금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정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 부당반품의 금지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수령 10일 이내 서면 통지)	✓ 부당감액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하도급대금의 지급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부당한 특약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간섭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가.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하도급법 제3조)

□ 계약 체결 시 법정 기재 사항을 포함한 서면 발급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정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6.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
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 발급의 시기

- 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조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공사에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 계약내역에 없는 위탁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예외)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
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서면 발급 요청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서류 보존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도 서면 보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주)넥스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4. 8. 29.자 의결 제2024-301호
[사실관계] 넥스코리아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주)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2018. 10. 18.자 의결(약) 제2018-085호
[사실관계] 브랜드메이커월드와이드는 2016. 7. 15. 수급사업자에게 A사의 신형 차량 매장 전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하도급법 제3조 제4항)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외) 아래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내의 범위로 단기간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연동의 주요 개념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다.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

-
- 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법 위반 유형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됩니다.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됩니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입니다.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합니다.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 사례

(주)시큐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7. 7. 11.자 의결 제2017-230호

[사실관계] 시큐아이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MF2 솔루션 리뉴얼'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① '업무축소 등 시큐아이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② '특근 및 근무시간외 잔업 등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시큐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7. 7. 11.자 의결 제2017-230호

[공정위 판단] ①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시큐아이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고, ②조항은 추가 근무에 대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의나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조)

□ 선급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하도급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 하도급대금이 10억 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하도급대금이 5억 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1억 원이라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5천만 원(= 1억 원 × 5억 원 ÷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 지급 시 준수 사항

- 선급금도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비율과 어음만기일을 유지하여야 하며(아래 타.항 참조), 선급금 지급기일(선급금을 받은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9. 8. 30.자 의결 제2019-206호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2016. 4. 11. ~ 2017. 8. 3. 1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로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일부 구간 잔여공사 등 1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0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 원(서면 미발급 등 복수의 위법행위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감액인지는 대금 결정 과정의 내용, 수단·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 최저가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 신규 개발품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 상당액을 더한 대가

□ 법 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단가 인하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협조 요청 등을 통한 금액 할당
 - 원사업자가 협조 요청 등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 사업자 차별취급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거래조건 착오를 유발하는 방법
 - 발주량 증가 등으로 착오를 일으켜 낮은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
 - 실질적 협의 없이 자율성이 제약된 상태에서 낮은 대가를 결정하는 경우(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위법)
- 정당한 사유 없는 직접공사비 이하 금액 결정
 - 수의계약 체결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최저 입찰가 이하 금액 결정
 - 최저가 낙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시에는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함
 - 예정가격은 사후에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증 등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낙찰자 변경도 금지됨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리한 대금 결정
 - 외부 환경 요인(경영적자, 임금 인상, 환율변동 등)에 따라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면서 그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관련 사례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1. 2. 18.자 의결 제2021-043호
[사실관계] 2008. 12. ~ 2017. 12.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인상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에도 신고인에 대하여는 가공비를 동결하여 차별 취급하였다. 또한, 2018. 1.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다른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가공비를 2015년 대비 6.7% 인상하였음에도 신고인에 대하여는 2008년도 대비 6.7% 인상하여 차별 취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동일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가공비 인상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 8. 10.자 의결 제2020-214호
[사실관계] 선박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은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임가공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크별, 선종별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 단가에 생산성 향상률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6억 1,400만 원(서면 미교부 등 복수 위법행위 포함)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였다.

바.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탁 시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위탁 내용의 변경에는 ① 하도급법 제3조상의 서면에 기재된 위탁 내용의 변경, ② 당초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의 지시, ③ 목적물 수령 후 추가 재작업의 지시가 포함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파산·회생절차 신청
 - 영업취소·정지 처분
 - 특별한 이유 없는 착수 거부
 - 목적물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 불가 등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서가 있더라도 절차·내용의 진정성이 없으면 임의 취소로 봅니다.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위탁취소로 인한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고 취소하였다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 '수령'은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 시점으로 봅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에는 직접 조달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납기 초과, 직접 조달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 납품, 생산·운송 관리 소홀로 인한 오손·훼손 납품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 사례

(주)르가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1. 12. 17.자 의결 제2021-323호
[사실관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한 귀책이 없음에도 현장 철수를 일방 지시하였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 없이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서면 미교부 포함)을 부과하였다.

(주)티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9. 8. 19.자 의결 제2019-196호
[사실관계] 기계설비공사사업자인 티이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류저장탱크 보온공사를 위탁한 후 누적적자 및 유동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한 점과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이유로 티이씨가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사.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하도급법 제9조)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 (예외)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검사 대상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 기준·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분쟁 및 지급시기 불확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합니다.
-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객관적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로 제크의 공인기관 검사도 가능합니다.

□ 검사비용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크기관 검사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대량 납품 시 검사와 반품

-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가 일반적이며, 납품 후 하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계약서에 반품사유·시기·보상 등이 명확하고, 하자 원인이 수급사업자 과실로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됩니다.

□ 관련 사례

(주)에이치에스애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3. 1. 3.자 의결(약) 제2023-001호
[사실관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매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을 경과하여 검사를 완료하였다.
[공정위 판단]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위반으로 보았고, 행위 및 위법성 인정과 시정조치 의견 수락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이 부과되었다.

아.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 부당반품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받은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반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품 시점, 부당반품은 납품 이후의 행위로 구별됩니다.
- (예외)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 발주와 다른 물품의 납품
 - 오손·훼손 등 하자 물품의 납품 등

□ 법 위반 유형

- 불명확한 검사 기준·방법에 근거한 반품
- 거래처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반품
- 원사업자 공급 원재료의 품질불량을 이유로 한 반품
- 원사업자 원재료 공급 지연에 따른 반품
- 제3자 검사 위탁 후 반품
- 납기지연 용인 후 반품
- 하자 책임 불명확 상태의 반품

□ 관련 사례

(주)신성이엔지·시너스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3. 31.자 의결 제2022-087호

[사실관계] 신성이엔지는 수급사업자에게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엔드볼트 부품의 납품을 위탁하여 수급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약 400만 원 상당의 49개의 부품을 “공급업체 과납”을 이유로 납품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반품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다.

자.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1조)

□ 감액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 시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 감액하는 행위는 명목·방법·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 시에 교부된 서면 기재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계약 체결 및 감액 경위, 이행 내용, 목적물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 정도, 감액 방법·수단,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감액의 정당성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 법 위반 유형

- 소급단가 적용
 - 단가 인하 합의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
- 협조요청·거래상대방 발주취소 등을 이유로 한 감액

- 현금지급·조기지급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감액
- 원사업자 손해에 실질 영향이 없는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
 - 포장지 일부 훼손 등 실질 손해와 무관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
- 위탁 수행 물품의 강매·장비 사용을 통한 공제
 -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 대가를 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 납품 후 물가·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 경영적자·판매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한 감액
- 원사업자 부담 경비의 전가
 - 법정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원사업자 부담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관련 사례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금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1. 8. 4.자 의결 제2021-204호
[사실관계] 제품 이상이 없음에도 불량 등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대금을 감액하였고, 반품이 없었음에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제11조의 원칙적 금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입증에 실패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하였다(탈법행위 포함).

차. 경제적 이익의 부담요구 금지(하도금법 제12조의2)

□ 경제적 이익의 부담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 위반 유형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관련 사례

대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8. 9. 10.자 의결(약) 제2018-074호
[사실관계]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대림종합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 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감리단 사무소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판단] 대림종합건설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의무 없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감리단 사무소 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풍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 1. 18.자 의결 제2013-014호
[사실관계] 도로공사를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대로 매입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한 후 12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공정위 판단] 풍림산업의 행위가 최초 분양가대로 수급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분양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카.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

-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자료로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정보, 그 밖의 기술·경영상 정보로서 유용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비밀관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법원은 완성 단계가 아니거나 업계에서 사용되는 정보라도 고유 기술·노하우가 반영되고 비공개가 유지되며 경쟁상 가치가 있으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9누51675 판결, 확정)입니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의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출·제시·개시·접근 허용 등 방식으로 기술자료에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는 공동 특허출원·공동 기술개발 약정 범위 내 자료, 대금조정 관련 원재료 원가비중 자료, 하자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 발주자 승인·등록·구매조건 이행에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및 지급방법, 자료 명칭·범위, 요구·제공일·방법,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일자, 요구의 정당성 입증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제공 시 원사업자는 명칭·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과 비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방법·일자 등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하였더라도, 취득 목적·합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위법성은 사용 목적·범위 일탈, 사용의 부당성, 수급사업자 사업활동 침해 여부, 사회통념상 부당한 수단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법 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밀유지계약·요구서면 없이 원가·단가구성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품질관리 명목으로 목적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자체 생산·제3자 제공에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하여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 출원 전에 선(先)출원으로 권리를 선점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 관련 사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 12. 15.자 의결 제2020-330호)
[사실관계] 승인도 등 기술자료를 다수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비밀유지·권리귀속·대가 등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로 인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주)쿠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5. 16.자 의결 제2022-126호
[사실관계]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부품목록, 제품사양서, 도면 등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승인원을 제크자에게 제공하여 거래선 변경과 단가 인하에 사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기술자료 유용을 이유로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삼성SDI(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5. 3.자 의결 제2022-106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요구하여 전달받은 후에 해당 도면에서 수급사업자 명칭을 삭제하여 제크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기술자료 유용 및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를 이유로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타.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 하도급대금 지급 원칙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 목적물 수령일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이동 가능한 물건은 납품일, 이동 불가능한 물건은 검사 개시일이 기준일입니다.
- (예외)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봅니다.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째 되는 날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 원사업자는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하도급대금 상환일)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 대금지급과의 관계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가 부과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의 현금비율로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현금비율 유지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어음 지급기간 유지 의무)

□ 관련 사례

대우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 4. 13.자 의결(약) 제2020-015호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자인 대우산업개발은 2017. 1. 31. ~ 2018. 12. 31. 2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23,90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5. 31. ~ 2018. 12. 31.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30,20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21,63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대우산업개발의 위 두 가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하도급법 제16조)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정 기준

-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총액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별 해당 비율에 따라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만, 그 미만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 조정 방법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품목별 조정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 내용과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 법 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해주지 않는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고도 30일을 초과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연 조정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초과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관련 사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9. 8. 30.자 의결 제 2019-206 호)
[사실관계] '평화의담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에도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65개 수급사업자와는 30일을 초과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선급금 미지급행위와 합산하여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하.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전속거래 강요 · 경영정보 요구)(하도급법 제18조)

□ 경영간섭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 조절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법 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해외 수출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전속거래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 원가정보, 타 거래처 매출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정보(거래처 · 납품조건 등), 전산망 접속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관련 사례

(주)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2022. 11. 8.자 의결 제2022-268호
[사실관계]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에게 임원의 임기, 처우, 협력사의 지분구성,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 등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였다. [공정위 판단] 거래 목적과 무관한 경영간섭으로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웅진코웨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9. 1. 20.자 의결 제2009-032호
[사실관계] ㄱ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의 ㄱ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에 해당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의 자율 결정을 제한하였다. [공정위 판단] 본질적 경영사항에 대한 간섭으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4. FAQ

가. 하도급거래 적용범위

- Q.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이나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다면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제조위탁과 단순구매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 제조위탁은 주문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규격·표준화된 자재이더라도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위탁)하고, 제조된 목적물이 범용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전용가능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구매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임가공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 포장재 제조위탁, 임가공 위탁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인력 도급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서면발급 관련

- Q. 기본 계약서를 받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 기본계약서를 받고 FAX나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로 발주받더라도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면 적절한 서면교부로 인정됩니다.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Q. 계약갱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서면을 받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는 것은 서면 지연 교부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Q. 급한 상황에서 전화로 주문받고 나중에 주문서를 받아도 되는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주문하고 주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후에 주문서를 발급하는 것은 서면미발급 또는 서면지연발급으로 위법행위입니다.
- Q. 서면에 기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미정으로 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고, "예정 기일"은 구체적인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Q.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도급법 위반은 아닌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 Q. 대금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
 -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함

-
- 늦어도 최초 대금지급시까지는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받아야 함

□ Q. 전자입찰 후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재협상을 요구받는 경우?

- 최저가 입찰 후 단가 재협상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위한 협상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재협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 가단가로 계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주의할 점은?

- 가단가 자체는 문제없으나, 원사업자는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단가 결정 후 즉시 보충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Q.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 그렇습니다. 하도급계약은 원도급 계약과 별도 계약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의무이며 수급사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Q. 지급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원칙적으로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계산하되,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
- Q. 어음할인료 계산 시 원사업자 회사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아닙니다.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어음할인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음으로 지급받을 경우 다시 그 할인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어음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서 할인료를 공제당하는 것은 부당한가?
- 그렇습니다. 어음으로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대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합니다.
- Q. 은행 입금수수료를 수급사업자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 발주 전에 수수료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비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 없는 수수료 공제는 부당감액입니다.
- Q. 수급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유보당할 수 있는지?
- 원사업자는 일단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미지급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손해를 이유로 확정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Q.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신용카드는 하도급법이 규정한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기타 지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일은 카드사를 통해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날입니다.

마. 선금금 관련

- Q.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나중에 선금금은 어떻게 받는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성금을 받은 부분은 선금금 의미가 없으므로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급사업자 요청으로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어음으로 받아도 되는지?
 - 그렇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 요청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가 없으므로 어음으로 받아도 하도급법 위반이 아닙니다.

바. 단가변경 및 감액 관련

- Q. 단가변경 시 소급적용에 관해 수급사업자가 주의할 점은?
 - 단가 합의일 이전의 발주분에 대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감액입니다. 원사업자가 소급 적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입니다.
- Q. 단가인하 합의 시 소급적용 요구를 받는다면?
 - 단가인하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입니다. 수급사업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일을 합의일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 원재료 가격 하락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당하는 것은 적법한지?
 -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당초 결정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만을 이유로 한 감액은 부당감액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 공급원가 변동 관련

- Q. 공급원가 상승 시 대금조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조정해줘야 하는지?
 - 원사업자에게 협의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 요청에 대한 협의는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충분한 협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Q. 제조위탁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증액(ESC) 의무가 있는지?
 -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상의 물가 변동분 반영의무는 제조위탁에도 적용되므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ESC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기술자료 관련

- Q.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수급사업자 입찰제안서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는지?
 -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협상단계에서 제공한 수급사업자 자료를 유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기계 운용 매뉴얼,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소프트웨어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등이 포함되며,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모든 기술정보가 보호대상입니다.

자. 경영간섭 관련

- Q. 원사업자가 자금지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 그렇습니다. 자금지원을 이유로 한 경영 관여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 변경/해지 관련

- Q. 용역계약에서 중간에 해지통보를 받는 경우?
 - 용역제공위탁의 경우 수령거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지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 회사명만 바뀐 경우는 동일업체로 보아 권리의무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지만, 회사명과 사업자번호가 모두 바뀐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거래관계 재설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카. 기타 실무 관련

□ Q. 판촉물 제작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 판촉물 제작이나 단순 소모품 제작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남용을 당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용역거래에서 지불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법 적용을 계기로 일방적으로 지불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조건 악화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 공동도급에서 일부 업체 부도 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집니다. 계약 시 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Q.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는 이를 통해 해당 원사업자의 지급 패턴과 조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원사업자의 공시 정보를 확인하여 거래 조건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가. 법 적용 여부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하도급 거래 해당여부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입니까?		
	위탁 내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제조하도급) 물품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제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수리하도급) 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건설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용역하도급)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에 체크하셨다면, 해당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서면 발급	귀사는 하도급거래를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받았습니까?		
	계약서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까?		
	법정기재사항 누락 시, 원사업자가 해당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까?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귀사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합니까?		
부담 특약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귀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담/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원사업자(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수급 사업자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귀사에게 책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도급 대금 결정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까? (예시) ① 다수의 협력업체 또는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㉔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 ㉕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 ㉖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협력업체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㉗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확인란 중 음영이 없는 부분에 체크하셨다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기술 자료	원사업자가 귀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귀사에게 교부하였습니까?		
	기술자료를 협의 사항(권리귀속관계, 사용 범위, 사용 기한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까?		
부당 발주 취소	원사업자가 위탁(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 취소 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하거나, 귀사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지연합니까?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였습니까?		
	원사업자의 귀책 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이 계약서에 사전에 명기되었거나, 안내를 받았습니까?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귀사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 대금이나 장비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사 및	원사업자가 검사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검사 결과 통지	였습니까? 위탁한 목적물을 납품한 이후 원사업자가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까?		
부당한 경영 간섭	원사업자가 귀사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2차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경영간섭행위를 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귀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아래 예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귀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 귀사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 요구	원사업자가 귀사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복 조치	귀사에게 부당하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보복조치가 있었습니까?		
부당 반품	원사업자가 귀사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납품된 물품을 반품하였습니까?		

➔ 확인란 중 음영이 없는 부분에 체크하셨다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선급금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귀사에게 선급금 지급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귀사에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할 선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귀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급금 지급 및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귀사가 선급금 수령 선택 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귀사에 지급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지연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정한 법정 이율(연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습니까?		
하도급 대금 지급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한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초과 시 법정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귀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징구하고 있습니까?		
하도급 대금 감액	원사업자가 위탁 당시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반영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귀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습니까?		
공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반영 받은 경우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원가 변동에 의한 대금 조정	30일 이내에 귀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귀사에 지급하였습니까?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까?		
	귀사의 하도급대금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요청 시,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 확인란 중 음영이 없는 부분에 체크하셨다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6. 하이브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 안내

(주)하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결(2025. 6. 9. 의결 제2025-116호)에 따라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공연 및 영상제작 분야 업체들을 지원합니다. 공연 제작 및 영상 제작 업무 과정에서 필요하신 장비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비상하는 여정에 함께 하는 모든 협력업체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 지원 대상 사업자

□ 대상: (주)하이브와 거래하는 공연 분야 및 영상제작 분야 협력업체 누구나

- 공연 분야: 공연과 관련하여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업무 수행
- 영상제작 분야: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등 영상제작 업무 수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주) 하이브 계약 체결 이후 2주일 이내

□ 신청 방법

-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신청방법은 계약체결 상대방인 하이브 측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다. 상생·협력 지원 방법

□ 알파(alpha) 사이트 판매 용품 구매

- 국내 최대 사무용품 사이트 알파(alpha)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장비 구매 (<https://www.alpha.co.kr/index.do>)
- 협력업체가 신청서에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주)하이브가 협력업체들의 신청 내역을 매월 취합하여 알파(주)에 전달하고 알파(주)가 신청 내역에 맞춰 제품을 일괄 구매한 후 각 협력업체에 개별 배송
- 제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하이브가 직접 알파(주)에 지급
- 협력업체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주)하이브는 원활한 제품 구매 및 배송을 위해, 일부 제품 유형은 미리 제품을 선정하여 리스트를 제공함
- 협력업체가 (주)하이브가 제공하는 제품 리스트 외의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를 원하는 제품과 판매 URL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협력업체가 알파몰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신청한 경우, (주)하이브가 알파(주)에 소싱을 요청할 예정이나 알파(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 한도 및 유의사항

- 구매 지원 물품은 공연 분야의 경우 '안전장비', 영상제작 분야의 경우 '소모품'에 한정함
- 협력업체들은 계약체결 시점에 연 1회 한도로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연 분야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거래 규모에 따라 연 50~200만 원을 지원 한도로 함
- 영상제작 분야는 연 150만 원을 지원 한도로 함
- 협력업체가 구매 지원을 신청한 제품의 총 구매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하이브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지원 기간

- 본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은 상생·협력 기금(공연 분야 1억 원, 영상제작 분야 1억 원)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진행
- 해당 기금이 소진되면 추후 공지 예정

끝.